2026년도 제13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6. 5. 13. 수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정경오(분과위원장), 김종원, 김춘식, 이용민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6-122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박현주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긴급차단 명령 사실 통지에 따른 접속차단 명령 심의
- 제3호: 접속차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957건(안건번호 제2026-67316호~68272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6-67316호(순번 1번)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드라이브 링크를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하고 있는 점, 불법복제물이 원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6-67317호~67323호(순번 2번~8번)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6-67324호~67325호(순번 9번~10번)는 블로그에 게시된 뮤지컬 불법복제물의 교환·판매 거래글에 관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6-67326호~68272호(순번 11번~957번)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

상물, 출판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각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대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o 제2호: 긴급차단 명령 사실 통지에 따른 접속차단 명령 심의

-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긴급차단 명령 사실 통지에 따른 11개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 11건(안건번호 제2026-13호~23호)
- 회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긴급차단을 명령한 11개 사이트에 대해 긴급차단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명령 가결함.

o 제3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접속차단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권고 1건(안건번호 제2026-1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6-1호(순번 1번)에 대해 접속차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정경오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 제13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6-12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정경오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의견 없음.

- 박현주 전문위원: 저작물 정보나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 등은 비식별 처리하도록 하겠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참석 위원 전원: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정경오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 정보 및 저작물 등과 관련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함.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심의 안건에 관한 회의록은「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쪽수를 기재하고 비공개로 결정함.

3. 안건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박현주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

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정경오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박현주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28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247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에 애니메이션을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하여 감상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한 사안 총 1건, 1개 게시물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에 중국 애니메이션 '♠♠♠♠ ♠♠♠: ♠♠♠♠'을 감

상할 수 있는 ♡♡ ♡♡♡♡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 ♡♡♡♡로 연결되는 링크가 2개 있는데,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면 ♡♡ ♡♡♡♡로 연결되어 영상을 바로 스트리밍으로 감상하거나, MP4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음. 두 번째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영상의 한글 자막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음. 위 ♡♡ ♡♡♡♡에서 제공하는 영상은 원저작물 전체 분량을 복제한 것으로 보임. 침해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만을 게시한 경우에는 영리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라고 하기 어려움. 그러나 심의대상 게시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에 "[♣♣] ♣♣♣♣ ♣♣♣ ♣♣ ♣♣♣ ♣♣♣♣ ♣♣"이라는 제목으로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목적으로 다수의 각 에피소드별 링크를 게시하고 있고, 게시자는 게시물에서 그대로 그 목록을 작성해 놓고 있을 뿐 그 외에 자신이 그와 같은 구♡♡♡♡♡ 사이트를 발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 등을 미루어 보면 당해 ♡♡ ♡♡♡♡ 사이트 역시 게시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링크 게시의 사안과는 다르다고 사료됨. 종합하면, 위 검토 내용 및 불법복제물이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고 및 제2호에 따른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정경오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순번 1번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정경오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블로그와 카페에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인 '◈◈', '○○○', '□□□'로 연결되는 링크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안 총 7건, 7개 게시물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8번은 '▼▼▼▼', '◆◆◆ ◆◆◆', '♤♤♤ ♤♤'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해외사이트인 '◈◈', '○○○', '□□□' 등으로 접속되는 직접링크 또는 링크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링크 정보를 복사·붙여넣기하여 접속하면 모두 저작권 침해 사이트인 '◈◈', '○○○', '□□□'에 접속됨. '◈◈', '□□□'는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글'에 검색결과 제한을 요청한 바 있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이며, '○○○'은 보호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한 사이트임. 현재 위 사이트에서 이용 중인 URL은 접속차단 조치 이후 생성 또는 이용되고 있는 대체 URL 주소로 추정됨.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에 대하여, 대법원은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

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바 있음. 또한 이에 앞선 하급심 판결에서는 해외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저작물에 대한 실질적 접근 가능성을 증대시켜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음. 우리 심의위원회 또한 게시자에게 불법행위 방조의 민·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를 회피할 수 있는 대체사이트의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특정 시점의 URL에 대한 차단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권 침해 정보성을 유지한다고 할 것임.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되도록 원천게시물에 직접 시정권고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 국내 온라인서비스에 소재하는바 이에 대하여 시정권고함으로써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정경오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순번 2번~8번에 대해 의견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에 동의함.

- 정경오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번~8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9번~10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에 게시된 뮤지컬 불법복제물의 교환·판매 거래글 총 2건, 2개 게시물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9번~10번은 ▷▷▷ ▷▷▷에 '◀◀ ◀◀ ◀◀ ◀◀ ◀◀◀ ◀◀ ◀◀◀◀ ◀◀ ◀ ◀◀', '◑◑ ◑◑◑ ◑◑ ◑◑ ◑◑'이라는 제목으로 뮤지컬 밀캠, DVD, 온라인 생중계 녹화 영상 등을 교환 또는 판매하고 있음. 게시물에는 게시자가 보유한 녹화물 등의 제목, 공연일, 출연자 목록 등이 다수 게시되어 있으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비밀댓글 등을 통해 영상 파일의 거래 조건을 교섭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현장 공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는 것 또한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고, 심의대상 게시물의 취지 등에 비추어 사적 이용에 의한 복제로 볼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바, 심의대상 게시물이 전제하는 것과 같이 공연을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는 행위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현장공연의 녹음 또는 녹화 파일, 권리자에 의해 이미 영상물 또는 음반으로 고정된 DVD나 OST를 복제한 파일 모두 보호원의 시정권고 대상인 불법복제물로 판단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일반 블로그 게시물 형태를 취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쇼핑몰의 제품 판매 게시물과

동일하게 불법복제물을 판매 또는 교환하는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 및 동일 블로그 내 유사 게시물에 달린 비밀댓글 등에 비추어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가 다수의 뮤지컬의 불법복제물을 판매 또는 교환하였으며, 해당 게시물이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임을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 등으로 볼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고 및 제2호에 따른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정경오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순번 9번~10번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 내 리스트가 판매 목록인지 질의함.

- 박현주 전문위원: 그러함. 공연 제목과 날짜, 주요 캐스팅이 기재돼 있고, 순번 9번의 경우 별도 파일로도 업로드되어 있음.

- 정경오 분과위원장: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정경오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9번~10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1번~957

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 총 947건, 1,237개 게시물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영화 '이프 온리 If Only'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51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이프 온리 If Only'를 판매 중인 사안임. 최근 재개봉하여 현재 극장에서 상영중인 영화 전체분량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중임.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72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판매 중인 사안임. 현재 속편이 개봉되어 극장에서 상영중인 영화의 전편 전체분량을 바로보기 및 다운로드로 제공중임.

(영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74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을 판매 중인 사안임. 최근 재개봉하여 현재 극장에서 상영중인 영화 전체 분량을 다운로드로 제공중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등을 웹하드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사안으로 시정 권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 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정경오 분과위원장: 순번 11번~957번에 대해 의견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정경오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1번~957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 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6-67316호~68272호(순번 1번~957번)에 대해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긴급차단 명령 사실 통지에 따른 접속차단 명령 심의

- 정경오 분과위원장: 제2호 안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박현주 전문위원: 이번 심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법 제13

3조의4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을 명령한 후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통지하고, 동조 제5항에 따라 접속차단 조치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상정된 사안임. 관련 법령 및 심의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통지는 별도로 제출하였음.

(긴급차단 조치 사이트 안건 요약표를 제시하면서)상정된 11개 사이트 주요 정보는 검토보고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람.

(방미심위 접속차단 심의가 가결된 사이트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대상 사이트들의 접속대상인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들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등에 따라 방미심위가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가결한 사이트들임.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URL의 숫자 부분 등을 업데이트 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전송되는 복제물 등이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요 권리자들의 이용허락 확인 내역을 제시하면서)심의대상 안건을 포함한 침해 사이트상 콘텐츠들의 주요 권리자들에게 이용허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바, 복제·전송자에게 복제물등의 복제·전송에 관한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판단됨.

심의대상 사이트들은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방미심위에서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가결한 사이트들 내지 그 대체사이트들 중에서 트래픽 상위에 속하는 사이트들 중 일부에 해당함. 따라서 저작권자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지속적으로 URL이 업데이트되고 있어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차단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됨.

또한 심의대상 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어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시정권고 등의 행정조치가 어렵고, 대부분은 저작권자가 삭제 통지를 하려고 하여도 통지를 수령할 주소를 사이트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저작권자로서는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어 접속차단 이외의 대체적 수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의대상 사이트의 동일성 표 및 확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심의대상 사이트들은 방미심위의 접속차단 시정요구로 차단된 사이트 내지 그 대체사이트와 도메인명, 사이트 제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일부 심의대상 사이트의 일부 게시물 정보의 경우 차단된 사이트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미 접속 차단된 사이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됨.

종합하면 심의대상 사이트들은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긴급차단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명령 가결 의견임.

- 정경오 분과위원장: 제2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법률상으로는 긴급차단의 요건이 3가지인데, 이를 심의할 때는 '정당한 권원이 있느냐'는 조항이 추가되었음. 권리관계를 개별적으로 다 확인하지 않는다면 심의 기준도 법률적인 부분을 따르는 것이 어떤가 함.

- 박현주 전문위원: 방미심위와 마찬가지로 권리자들한테 공문으로 이

용 허락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 부분도 참조해주시기 바람.

- B 위원: 전체가 아닌 일부 권리관계만 확인한 채로 전체를 차단한 것에 대해서 과잉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 C 위원: 권리자와 공문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자칫 불필요한 절차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너무 절차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면 그 사이에도 저작권자의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되고 있으므로, 시작 자체는 필요한 부분을 갖춰서 진행하고 차차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면서 진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함.

- B 위원: 해당 조치는 침익적 행정행위로, 근거 법률과 함께 사안의 심각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에서 긴급하게 처리하는 사안이다 보니 심의규정상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그러한 요건은 만일 불법사이트 운영자 쪽에서 반박 논리를 내세운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음.

- C 위원: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예를 들어 돌발적,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모르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 법 개정으로 접속차단이 될 것을 알고서도 잡히지 않을 것을 자신하고 '□□□'처럼 자진 폐쇄한다고 했다가 다시 재운영하면서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임.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해자, 피해자 모두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하겠지만, 이런 사이트들은 우리가 심의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봐왔던 불법 사이트들임. 요건이나 다른 법리적 해석으로 인해 조치가 지체되는 동안 그것을 악용할 수도 있으므로, 제도는 개선해 나가되 차근차근 처리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임.

- 박현주 전문위원: B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됨. 공문 확인 절차는, 다른 측면으로는 권리자들한테 이런 불법 사이트들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의미도 있음. 또한 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함에 있어서 최소한 권리자의 허락여부는 확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기도 함.

- C 위원: 시정명령이 하달되면 5일 이내에 시행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함.

- 박현주 전문위원: 긴급차단 사실 통지에 따른 접속차단 명령의 경우 그러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음.

- B 위원: 긴급차단과 시정명령에 따른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부분도 추후 생각해봐야할 것으로 생각됨.

- 정경오 분과위원장: 더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정경오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긴급차단을 명령한 11개 사이트에 대해 긴급차단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명령을 가결함.

(긴급차단 명령 사실 통지에 따른 접속차단 명령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6-13호~23호(순번 1번~11번)의 접속차단 명령을 가결함.”

o 제3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접속차단 심의

- 정경오 분과위원장: 제3호 안건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박현주 전문위원: 이번 심의는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1개 사이트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접속차단의 시정을 권고하기 위한 것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함.

  (안건 요약표를 제시하면서) 상정된 1개 사이트 주요 정보는 검토보고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람.

  (방미심위 접속차단 심의가 가결된 사이트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대상 사이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사이트 ‘□□□’에 대하여는 방심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정보로 판단하여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가결한 바 있음. 심의대상 사이트는 2026. 4. 27. ‘□□□’ 사이트 서비스 종료 후 새롭게 생성된 동명의 사이트의 대체사이트로 확인됨.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채증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나.항과 같은 비교에 의하면 심의대상 사이트는 방미심위에서 이전에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가결한 사이트를 대신하여 운영되는 사이트와 동일 내지 유사한 대체사이트로 인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주요 권리자들에 대하여 이용허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

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여전히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사이트 전체가 기존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이트 전체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다른 콘텐츠 등 불법복제물에 관련된 정보를 전송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주요 권리자들의 이용허락 확인 내역을 제시하면서)복제·전송자에게 복제물등의 복제·전송에 관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표와 같이 심의대상 사이트 상 콘텐츠들의 주요 권리자들에게 공문으로 이용허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았음.

심의 대상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서, 대체 전 사이트는 문체부에 의하여 트래픽 상위에 속하는 37개의 사이트로 관리되었던 주요 사이트 중 하나임. 대체 전 사이트의 트래픽 양이나 인지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자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 지속적으로 URL을 바꾸어가며 차단조치 등을 회피하고 있어, 저작권자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단 등 조치를 할 필요도 있음.

심의 대상 사이트들은 웹툰과 같은 상업적 저작물들을 아무런 권한도 없이 게시(전송) 등의 방법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저작권자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어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없으며, 심의대상 사이트들 모두 타인의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무단으로 제공하여 광고 수익 등을 얻기 위하여 개설된 것으로 보임. 또한 심의 대상 사이트 대부분은 저작권자가 삭제 통지를 하려

고 하여도 통지를 수령할 주소를 사이트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저작권자로서는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상황이므로 저작권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심의대상 사이트를 통하여 접속되는 사이트는 방미심위의 접속차단 시정요구로 차단된 바 있으나 서비스 종료되었던 '□□□' 사이트 및 이를 대체하여 새로 생성된 동명의 사이트와 사이트 제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일부 게시물 정보의 경우 차단된 사이트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별도 안내 페이지를 통해 향후 대체사이트의 URL을 안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미 접속 차단된 사이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됨. 이와 같은 대체 사이트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기존 접속차단 효과가 감소하고, 이에 따른 저작권자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음.

심의대상 사이트 1개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와 동일한 대체사이트로서,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접속차단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정경오 분과위원장: 제3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접속차단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심의 대상 사이트는 방심위에서 기존에 차단했던 사이트의 대체사이트라기 보다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만든 별도의 사이트로 생각됨. URL도 상이하고, 메인 페이지 포맷도 다름. 불법사이트로서 접속차단의 명분은 충분하니 별개의 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지.

- 박현주 전문위원: 앞서 설명드린 바와 4월 말경 서비스 종료했던 □□□를 대체하는 사이트가 5월 초 생성되었고, 해당 사이트는 다시 새로운 주소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음. 현재 심의 대상 사이트는 그렇게 안내되고 있는 최신의 URL 주소임. 이와 같은 사정을 보더라도 방미심위 등에서 차단했던 '□□□' 사이트와 현재 접속차단 대상인 사이트는 사실상 동일하다고 사료됨.

- D 위원: B 위원님 말씀은, 동일한 대체사이트가 아니라,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그냥 대체사이트라는 말씀이신 건지 질의함.

- B 위원: 우리 측에도 접속차단의 권한이 있고, 접속차단 된 이후에 생성된 대체사이트는 긴급차단의 대상이 되므로, 방심위에서 접속차단한 불법사이트의 대체사이트임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임.

- D 위원: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체사이트라고 기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정경오 분과위원장: 그럼 제3호 안건은 가결하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의견 기재하는 것을 제안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정경오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1개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접속차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6-1호(순번 1번)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권고를 가결함.”

4. 폐회 선언

o 정경오 분과위원장이 제13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6년 제13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5. 20.

분과위원장 정경오

위원 김종원

위원 김춘식

위원 이용민